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2. 10.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7월 1일
- 회부일자 : 2002년 7월 3일

다. 상정일자 :

-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2. 7. 15)
심사보류
-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2. 8. 22),
심사보류
-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2. 9. 11)
심사보류
-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2. 10. 18)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 문 기)

가. 제안이유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오창벤처프라자」 건립계획을 2001년도 제1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입주 및 지원시설의 확충사유가 발생하였고,
-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할 「오창연구타운」 조성부지 및 「지역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오창벤처프라자라 건립계획 변경》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 (오창 벤처임대공단 내)
- 규 모 : 연건평 7,124㎡(2,155평, 지하 1층, 지상6층)
- 사업기간 : 2001. 7 ~ 2003. 12월 (30개월)
- 사 업 비 : 6,700,000천원(특별교부세 29억, 도비 31억, 국비 7억)
 - 규 모 : (당초) 4,960㎡ [1,500평], → (변경) 7,124㎡ [2,155평]
 - 사업비(도비) : (당초) 21억원 → (변경) 31억원
- ※ 예산확보계획 : 2001년(6억원), 2002년(10억원), 2003년(15억원)

《오창 연구타운 부지 취득》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1
- 규 모 : 287,085㎡ (86,843평)

- 조성계획 : 지역산업진흥센터 등 5개분야
 - ① 지역산업진흥센터(9,000평)
 - ② 테크노 파크 (30,000평)
 - ③ 나노 Fab (10,000평)
 - ④ 국책연구기관 유치(생명공학연구원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 20,000평)
 - ⑤ 기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신소재신약개발연구소 등 (17,843평)
- 사업기간 : 2002. 7 ~ 2006. 12
- 사업비 : 13,026,450천원(전액 도비 2,605,290천원×5년)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

- 위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5-1번지(오창연구단지 내)
- 규모 : 부지 29,752㎡(9,000평), 연건평 10,248㎡(3,100평)
 - 반도체 센터 : 연건평 1,600평 (지하1, 지상4)
 - 전자정보 센터 : 연건평 1,500평 (지하1, 지상4)
- 사업기간 : 2002. 6 ~ 2003. 12
- 사업비 : 8,200,000천원(국비 5,800,000, 도비 2,400,000)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이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기술 집약형 벤처산업의 육성과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오창 벤처프라자 건립사업》은

청원군 오창면 소재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지식·기술 집약형 벤처기업전용 창업 육성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86회 임시회(2001. 4. 18)에서 벤처빌딩 건립을 위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벤처기업이 처한 사회여건의 변화와 다른 시설과의 독자적인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 건물의 연면적을 당초 1,500평(지상4층 지하1층)에서 655평이 증가된 2,155평(지상6층 지하1층)으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도 당초 50억원에서 ⇒ 67억원으로 17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려는 것이나,

○ 건축공사 진행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유와 추가로 소요되는 17억원(도비 10억원 포함)의 재원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오창 연구타운 부지 취득》은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할 「오창 연구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에 도비 13,030백만원을 투자 부지 287,085㎡(86,843평)을 매입하여

- 지역산업진흥센터 9천평,
- 테크노파크 30천평,
- 나노 Fab 10천평,
- 국책연구기관유치 20천평,
- 기타(신약개발연구소 등) 17.8천평으로,

IT, BT, NT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부지매입비 130억원의 도비 확보방안,
- 지역산업진흥센터를 제외한 테크노파크, 나노 Fab,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투자사업비 규모 및 재원확보대책,
-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BT산업의 특성화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기관과 신약개발연구소 등을 유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지역산업진흥센터 건립사업》은

『오창 연구타운』내 부지 9,000평, 연건평 3,100평 규모로 82억원(국비 58, 도비 24)을 투자하여 반도체센터와 전자정보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역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향후 유지관리비 소요액과 재원 확보대책,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동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현장을 방문하고, 제202회, 제203회,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관련법규에 의한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제202회)과 오창연구타운 내 연구기관유치 세부계획과 재원확보대책 등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자료요구(제203회),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재원대책과 연구기관 유치 및 추진 의지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참으로(제204회) 심사보류 하였음.

2002. 10. 18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의지표명을 확인하고 원안가결 함.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4호)